

##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020년 1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차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보주체도 모르게 자동화된 방식의 개인정보 생성,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 증가, 서비스와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등 환경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각 국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and Default) 제도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3) 현재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후보자의 전반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각종 산업관계법령 입법시 개인정보에 관련 규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패싱해 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상시적으로 발생.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철저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정부나 산업계가

데이터를 산업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

## 2.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인공지능 서비스는 검색, 추천 알고리즘, 챗봇 뿐 아니라 채용, 금융서비스, 범죄예방 등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점차 그 활용이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영역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인권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왔습니다. 최근 충격을 안겨준 법무부·과기부의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증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도외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AI 채용 등 공공기관이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 채용 등에 관한 인공지능의 경우 구직자의 삶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가 필요함.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관계부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직자에게도 동의를 받고 사용원리 등을 충분히 전달해야 함. 필요 시 구직자가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절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2) 적절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때까지 공공장소 얼굴인식 등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판매·사용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3) 인공지능이 편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학습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편향성과 차별,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 및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큼. 이에 인공지능의 인권 과 안전을 감독하고 도입 기관의 책무성과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법률적 규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규율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정의당은 이미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차별 금지 원칙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도입 및 프로파일링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시대가 온다 해도 이용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알고리즘 역시 적절한 감시와 견제의 틀 안에 있어야 함. 나아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의 확대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3. 통신비밀의 보호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 및 야당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수집은 비단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니며,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로의 권한을 활용해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자의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정보주체에게는 통지조차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통신자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통신자료(가입자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p>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함. 다만 법원의 허가(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자료 수집 요건에 따른 차이를 두어 국가안보 등 예외 상황의 경우에는 법원 허가(영장)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p>		

2) 통신자료 제도 외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추적 요건의 엄격화, 인터넷 패킷 감청의 요건 강화 등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국정원 패킷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의견이 있었고, 이에 제20대 국회는 2019년에 법개정을 하였음. 하지만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일부 사항만 개정했을 뿐 통신제한조치 연장 기간 요건의 불명확성, 실시간 위치추적 예외 사유(전기통신 수단 범죄)의 부적절성,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유예 사유 확대 및 제재방안 누락, 이동통신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미개선 등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음. 개인정보와 정보인권이 중요한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최소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함

#### 4. 망중립성 보장

한국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망중립성을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5G 환경으로의 변화를 명분으로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미 유럽연합은 망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개방과 공유의 인터넷 정신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은 지켜져야 함.

#### 5.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락인(Lock-in) 효과, 데이터 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승자독식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일방적 정책 변경,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 및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부당기업인수·이해충돌·차별취급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3)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와 근절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술혁신은 무조건 선이고 4차산업혁명은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처럼 분식되는 시대는 지났음.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명과 암을 균형있게 인식하고, 국가가 혁신의 긍정성을 살리고 부정성을 줄여나가며 혁신의 성과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규칙’을 만들어야 함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정보 독점 및 비대칭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교섭권 등을 명시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

4) 빅테크/플랫폼이 맞춤형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혹은 행태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거나 얼굴인식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데이터 3법, 데이터 기본법, 산업데이터 법 등 개인정보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배제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

심상정 후보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할 것임

- 1) 가명정보,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 동의절차의 강화를 비롯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
- 2)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에 대해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부권을 부여
- 3) 개별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법령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하도록 유도
- 4)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컨설팅, 기술지원을 확대할 것

## 6. 주민등록제도 개선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왔고,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제한적이거나 허용되었고,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령은 많고 통신, 금융, 의료 등 주요 민간 부문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1)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 2) 주민등록번호 대신 (조세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p>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이미 대량유출을 겪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와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만능키 역할을 하고 있음. 목적별 번호 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p>		

## 7.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p>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생체인식기술 등 사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설안전 등 경영상 목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성능이나 감시 범위,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고지되거나 사전에 협의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근로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인 고용주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사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감시설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으로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p>
--

1)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전자적 감시설비가 활용되고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전자적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합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p>노동 감시는 노동력을 관리하는 용도나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다수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업장 감시 시스템이 노동인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2017년 두 차례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제도개선이 없고, 법적 규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시 설비의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담고,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감시설비 설치·운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p>		

2)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자 감시를 막고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감시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노동조건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감시설비 설치 및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노동조건에 위 내용을 명시할 경우 단체협약 체결 시 감시설비 설치·운영과 노동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감시설비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노동자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춰 조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에 감시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규정을 두고,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 개인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설비 설치·운영 과정에서 대체수단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대체수단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감시설비를 통해 노조의 설립·운영을 위한 노동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 8.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소위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 법안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비단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위 1인 미디어, 결국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책임을 묻거나 허위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라고 간주되는 정보)에 대해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했던,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혹은 가짜뉴스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p>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가짜뉴스 단속을 위한 이용자의 민·형사상의 책임 강화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이미 과도합니다. 과도한 명예훼손죄 처벌 문제의 개선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단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역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사의 동의없이 기사열람이 차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고, 여기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언론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p> <p>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명예훼손 처벌 개선과 공론장 회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 뉴스서비스는 공익을 우선하는 이용자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튜브, SNS 등의 플랫폼은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큰 공적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p>		

2) 현행 임시조치 제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행정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p>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현행의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지하여 일반적 심의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행정심의회는 아동·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p>		

## 9.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p>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법제 및 거버넌스는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국정원이 공공부분 정보통신망, 과기정통부가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법제도 분산되어 있습니다.</p> <p>최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의안번호 211314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을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투명성과 민관협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이버보안업무를 기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권한을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의안번호 2113670.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p>
---

1)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찬성	반대	기타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2) 바람직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함
--